

제1절 추진경과 및 본공사 착수

1. 공사 추진경과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1995년 3월 KEDO가 설립되면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1997년 7월에 경수로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 정부가 KEDO에 용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정지하고, 숙소·사무실·식당·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통신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은 협상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1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부지준비공사는 재원분담협상 및 차관공여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KEDO-한전간 주계약(TKC)이 체결되지 않아 2000년 2월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부지준비공사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합동시공단(현대건설, 대우, 동아건설, 한국중공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말 현재 남측 800여명, 북측 100여명 등 총 900여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불도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차량 등 315대의 장비도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

그 동안의 공사실적을 보면, 2000년말 현재 경수로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정지작업

은 약 90%가 완료되었다. 부지정지작업 이외에 본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로써 부지 인근 진입도로 27km를 개설·포장하였고, 남북한을 연결하는 전용통신망 10회선과 부지내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임시 동력설비, 중기수리고, 유류저장고, 건설사무소 등도 마련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근로자 숙소 및 식당, 목욕탕, 의무실, 노래방, 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테니스장,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교회, 법당, 성당 등 종교시설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성TV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외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22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이념의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서로 협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2. 주계약(TKC) 발효 및 본공사 착수

가. 주계약(TKC) 체결 및 발효

경수로건설 본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KEDO와 한전간에 주계약(TKC : Turn-Key Contract)이 우선 체결되어야 한다. 주계약은 1996년 3월 KEDO에 의해 주계약자로 선정된 한전이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is)으로 한국표준형 경수로발전소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규정하는 기본계약이다.

KEDO와 한전은 1997년 10월부터 15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방대한 주계약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999년 12월 15일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천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한편, 주계약(TKC) 발효조건인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은 1999년 12

월 15일, KEDO-일본 국제협력은행간 융자계약은 2000년 1월 31일에 각각 서명됨에 따라 주계약이 2월 3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는 본공사에 진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부지준비공사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6월에는 취수방파제, 물양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착수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23%의 공정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계약(TKC)의 발효에 따라 경수로의 발전소 설계 및 건설기자재의 발주·제작에도 착수하였으며, 예비안정성 분석 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운영·정비요원의 훈련계획 등 건설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KEDO와 한전간에 체결된 주계약은 총 1,8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서 계약 일반조건 38개 조항(150개 세부조항)과 22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계약의 주요내용>

1. 의무사항

- o 한전
 - 가압경수로 1,000MW급 2기 건설, 각종 생활 및 기반시설 설치·운영, 부지운영 및 건설방법에 대한 책임
- o KEDO
 - 부지제공,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부지내 질서유지, 통신수단 제공
- o 북한
 - 경수로 공급협정, 의정서 등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2. 공사기간

- o KEDO-북한간 별도 의정서(인도 및 조치일정 의정서)에 따라 확정

3. 계약금액

- o 1997년 1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40.8억불(물가변동분 보상조건)

4. 주요 계약조건

- o 원자력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의 재정적·법적 보호
 - KEDO는 한전 및 협력업체들을 원자력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법적 조치를 마련
- o 분쟁 및 중재절차
 - 준거 : 국제상사중재규칙
 - 중재장소 및 사용언어 : 서울, 영어
- o 교육훈련
 - KEDO는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에 따라 충분한 수의 북한 훈련생을 공급
- o 보증
 - 전기출력 : 1,000MW(허용오차 : ±3%)
 - 기간
 - 주요기자재 : 성능보증 시험 후 2년
 - 시공 : 성능보증시험 완료 후 2년
- o 기술지원
 - 한전은 첫 호기 준공 후 1년 동안 운전·보수유지를 위한 기술 지원

5. 발효

- o KEDO-한국수출입은행, KEDO-일본국제협력은행간 응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효

나. 사업관리체계 강화

우리 정부와 KEDO는 본공사 착수 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2000년 2월 본공사 착수 후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가 800명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능공 숙소 등 생활시설과 후생관 등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도 증편하여 2000년 10월부터는 속초-양화간에 월 2회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인력을 수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자통신망 구축, 우편물 폐낭중계 등 각종 의정서상의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KEDO는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KEDO 인원들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0년 2월부터 우리 인원으로 구성된 「KEDO 질서유지대」 35명을 파견·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의 현지생활을 안내하는 「경수로생활수첩」을 발간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에게 「방북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의 대규모 인적·물적·기술적 교류와 협력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

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재원조달

가. 재원분담결의

경수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수로건설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6년부터 예상사업비 산정과 함께 각 국가별로 분담할 금액을 정하는 재원분담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원분담협상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년여에 걸친 재원분담협상 끝에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유럽연합(EU)는 KEDO 가입당시 약속한 7,500만 유로화(ECU)를 기여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시의 추가적인 부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나. 차관공여협정 및 융자계약 체결

KEDO 집행이사국간에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그 후속절차로써 KEDO는 한국 및 일본과의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국과 일본

은 「차관공여협정」 문안을 각각 마련하여 KEDO 집행이사회 및 실무회의에서 KEDO 집행이사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일 양자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1999년 4월 6일 KEDO 집행이사회에서 「차관공여협정」 문안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는 협정 체결에 필요한 정부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1999년 7월 2일 「차관공여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서명 직후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해 「차관공여협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8월 12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이를 KEDO에 통보함으로써 같은 해 8월 19일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되었다.

한편, 일본은 자국 의회의 정기회기가 6월 말에 종료되고 그 이전에 「차관공여협정」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9년 5월 3일 일본 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에 서명하고, 6월 30일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7월 15일 일본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을 발효시켰다.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된 후, 1999년 9월부터 「차관공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용자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용자계약」 협상이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일본의 국제협력은행간에 수 차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전이 주계약을 체결한 직후 KEDO와 한국 수출입은행간의 용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KEDO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간의 「용자계약」도 2000년 1월 31일 체결되었다. 이로써 본공사 착수 등 경수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

다. 재원조달 및 공사비 분담

1998년 11월 9일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경수로사업비 분담분에 대한 국내재원조달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국내재원조달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형평성에 부합되는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전기요금납부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1998년 11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3일 당정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9년 5월까지 5차례의 당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설명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전기요금납부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였다. 1999년 5월 7일 제5차 당정회의에서 사업비 조달방안으로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7월 1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8월 4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당초에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국내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00년 5월 30일 15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16대 국회에 들어와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정에서 분담하는 방안과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당분간 국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은 경제상황, 재정여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키로 하였다.

한편, KEDO는 2000년 2월 3일 주계약(TKC)이 발효되고, 본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경수로건설공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0년 12월까지 2억 8,878만달러의 건설공사비를 분담하였으며, 일본은 1억 2,376만달러를 분담하여 총 4억 1,255만달러의 건설공사비가 주계약자인 한전에 지급되었다.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재원은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채를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바, 국채발행 규모는 총 4,050억 원이다. 연도별 발행규모는 1999년 1,500억 원이고, 2000년 2,550억 원이다.

제2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1. KEDO-북한간 협상경과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여 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먼저 경수로사업 착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KEDO 인원에 대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와 통행·통신 문제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여 1996년 7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 1월에는 경수로 부지인수 및 북한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제반원칙을 정하는 「부지 의정서」와 「서비스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북한이 경수로 대금을 미상환할 경우에 대비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까지 경수로건설 착공에 필수적인 6개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이후 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 10월에는 「훈련의정서」가 체결·발효되었다. 1997년부터 총 3차례 진행되었던 「품질보장의정서」 협상이 2000년 7월 재개되어 몇 가지 이견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2000년 말까지 이미 체결된 의정서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체결해야 할 의정서의 현황은 표와 같다.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비 고
특권 · 면제 및 영사보호	KEDO의 법적 지위, KEDO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 등	경수로 공급협정 제4조 6, 7항	1996.7.11 발효
통 행	KEDO인원의 부지접근(자유로운 출입절차) 및 효율적 통행로 개설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3, 6항	"
통 신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5, 6항	"
부 지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 · 사용에 관련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5조 3항	1997.1.8 발효
서비스	북한의 노무 · 물자 · 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4, 6항	"
미지급시 조 치	상환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6조 3항	1997.6.24 발효
훈련	경수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경수로 공급협정 제7조 2항	2000.10.20 발효
품질보장	경수로 품질 및 성능 보장	경수로 공급협정 제6조 4항	협상중
인도일정	북한의 핵동결 및 해체조치와 경수로 공급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3조 3항	미 협의
상환조건	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금액 및 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2조 4항	"
사용후 연료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 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8조 4항	"
핵 안전 및 규제	경수로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10조 5항	"
핵사고시 책 임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 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2항	"

후속 의정서 협상과는 별도로 KEDO는 기 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상을 북한측과 수시로 개최해 왔다. 1997년 4월부터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같은 해 7월 2일 북한출입, 통관, 해상수송 등 19개 분야의 세부절차에 합의하였으며, 1997년 8월에는 개별서비스계약(ISC) 문안에 합의한 바 있다.

1998년 KEDO는 북한측과 2차례의 고위전문가 협상이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1997년 8월 부지준비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효율적·경제적인 해로(海路) 이용, 북한 근로자 임금 수준, KEDO 인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1999년에도 2차례의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협상이 개최되었다. 2월에 개최된 1차 협상에서 KEDO측은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될 본공사에 대비하기 위해 객화선의 운항회수 및 승선인원 확대, KEDO인원의 인근휴양지 방문, 독자통신망 설치, 우편물 폐낭중계 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공사 진척도를 보아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기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2차 협상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북한 항산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당초 본공사 착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반 현안들을 협의키로 하였으나, 북한측이 공사지연 책임을 KEDO 측에 전가하고 북한 노동력 공급에 관해 상당한 이견이 노정되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만, 1999년 5월 실무전문가 협상에서 문안에 합의한 바 있는 「환경면책 양해각서」만 서명되었다.

2000년 2월 3일 주계약(TKC)이 발효되어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된 2월 하순에 개최된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협상에서는 「훈련의정서」 등 후속의정서 협상 일정을 마련하였고, 본공사 추진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1999년 9월 고위전문가 협상에서 노무인력 임금을 현재의 110달러를 600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이래, 노무인력 임금문제는 KEDO-북한간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노무인력 임금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KEDO 사

무총장이 2000년 8월과 10월 2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KEDO측은 2000년 12월 6일 도쿄에서 개최된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노무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0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협상에서는 KEDO원전의 핵사고 책임문제, 옥외 개폐소 설치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경수로사업을 위해 운행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2000년 7월 해상수송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는 양화무선국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SSB통신장비 제공 및 운영에 관한 회의록(ROD)」이 서명되었다.

고위전문가 협상 이외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여 협의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2. 후속의정서 체결 추진

가. 훈련의정서 협상

1999년에는 경수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문제를 규정하는 「훈련의정서」 협상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1차 협상은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북한의 향산에서 개최되었고, 2차 협상은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에서는 훈련인원 선발, 훈련종료 시기, 모의 제어반 제공, 훈련인원 보호문제 등이 협의되었으나, 훈련장소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 체결협상이 북한 향산에서 재개되어 쌍방은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다. 「훈련의정서」는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KEDO 앤더슨(Anderson) 사무총장과 북한 원자력총국의 김희문

부총국장간에 서명되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적절한 훈련후보생을 제공하고 KEDO는 KEDO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북측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훈련의정서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1.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경수로발전소 운영과 유지를 위해 KEDO가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이행○ 북한은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훈련후보자를 제공
2. 훈련계획의 수립·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DO의 훈련계획은 강의실 교육, 실험실훈련, 현장훈련 등을 포함하는 1단계 훈련과 부지에서의 현장경험훈련의 2단계 훈련으로 구분○ 훈련은 주계약(TKC) 발효후 18개월부터 개시○ 훈련계획에 참여할 북한 훈련생 수는 529명○ 훈련장소는 금호부지, 북한내 부지 이외의 장소,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여타 장소 및 KED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타 국가
3. 훈련계획 검토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DO와 북한 운영기관의 훈련계획이 원자력산업 표준관행과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독립된 훈련 전문가그룹이 훈련계획에 대해 검토 및 인증 시행
4. 상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DO는 북한 운영기관의 훈련계획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경수로 훈련전문가와 비상시에 대비한 자문관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 KEDO와 북한은 상호 협력

나. 품질보장의정서 협상

KEDO와 북한은 1997년 중에 두차례(1차:11.4-11 향산, 2차:12.3-23 뉴욕), 1998년 1차례(8.10-27, 뉴욕)의 「품질보장 의정서」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시운전 기간 중의 품질보증 활동의 주체, 품질보증 활동 참가인원에 대한 특권·면책, 전기출력 미달시 보상문제 등이었다.

2000년 7월 「품질보장의정서」 관련 4차 협상이 북한의 향산에서 개최되어 대체적인 문안이 합의되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